의정부 민락2지구 B12블럭 호반베르디움 입주자모집공고

VERTIUM

※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, 미숙지 · 착오 청약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.

■ 이 주택은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·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(2015.02.27이 적용되오니, 이하에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- 청약 순위에서 건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별로 모집 공급

: 기존1, 2, 3순위 청약을 ⇒ 1, 2순위 청약으로 간소화 / 수도권 1순위 발생 요건이 '1주 간', '2년 경쟁률 1:1 이상' ⇒ '1년, 모집 남법교 후 변경

-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

: 기존 무주택세대원(직장인근 1시간 이내 거주지역 제외)인 세대주 ⇒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(세대분리 인한 청약자 방지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.

-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준 일부 제한 완화 :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/ 주택규모별 기간조정 및 주택규모 상향 시 청약예한 기간도약일 폐지

-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유주택자 감점 폐지 :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

-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: 기존 '60㎡ 이하 +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' 에서 ⇒ '60㎡ 이하 +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, 비수도권 6천만원 이하로 변경

※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5.02.2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등 청약시기 변경.

■ 이 주택의 청약 및 당첨자 관리는 한국감정원 청약자격조건 기간, 1회,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1인 1세대 기준으로 선착 순 기준 1회만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.

■ 이 주택은 본인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분양가격의 70% 이내의 금액을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분양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.

■ 이 주택은 2015년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청약금액 등이 변경되었으니 청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전문은 사업주체 홈페이지 (www.verti.co.kr) 또는 견본주택에 게시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청약신청자격별 청약신청일정이 다르므로, 반드시 자격별 청약일정을 확인하고 해당 청약일 공고일에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청약신청자격별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참조

■ 고령자와 장애인 최하층 우선배정

: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(2015.06.25)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'장애인복지법'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이면 신청자 모두 '장애인복지법'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이면 신청자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상관없이 최하층 중 우선 배정되오니 청약시 본인의 해당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고령자와 장애인 최하층 우선배정 적용대상

: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(2015.06.25)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'장애인복지법'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이면 신청자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상관없이 최하층 중 우선 배정되오니 청약시 본인의 해당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청약신청자격별 청약신청일정이 다르므로, 반드시 자격별 청약일정을 확인하고 해당 청약일 공고일에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청약신청자격별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참조

■ 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 시 '주택청약종합저축'에 가입하여 납입인정을 받은 기간은 '주택법 시행령'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'청약저축', '주택청약종합저축', '청약부금', '청약예금'에 가입하여 납입인정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.

■ 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 시 '주택청약종합저축'에 가입하여 납입인정을 받은 기간은 '주택법 시행령'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'청약저축', '주택청약종합저축', '청약부금', '청약예금'에 가입하여 납입인정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.

■ 청약신청자격별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참조

■ 청약신청자격별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참조

■ 청약신청자격별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참조